

##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4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년 월 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청주의료원에 위탁·운영되어 온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 정신보건법 개정(1997.12.31)에 따라 2001. 6. 30까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후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
- 2001. 6. 30자로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변경허가 처리되어 운영하게 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(조례제1411호, 1985. 1. 25)를 폐지함.

###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###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첨 부 :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 
관계법령 발췌

##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(조례제1411호, 1985. 1. 25)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-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칙의 폐지)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운영규칙(규칙제1359호, 1985. 2. 15)은 이를 폐지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정신보건법

제12조(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) 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, 장비의 기준,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칙 제2조(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 제4조(정신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신요양병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정신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